

손실보상 비대상업종 9.4조원 지원



손실보상·비대상·업종 지원 방안

10.8일 시행된「소상공인지원법」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
금지·제한업종이 대상이며,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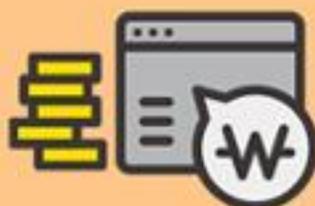
비대상 업종

- 1 동시이용 인원 제한
- 2 시설이용 제한 업종 및
- 3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받은 기타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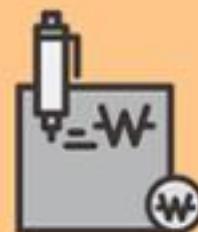
3대 지원 원칙



금융지원, 부담경감,
매출회복 수요보강 등을
패키지로 지원



손실보상 비대상 업종
공통지원+업종별 맞춤형
지원을 병행



금년 조치기능 사항은
즉시추진 + '22년
실행기능 사항 mix

금융지원 8.9조원



일상회복 특별융자 2.0조원 신규 공급 ^{'21년}

[대출조건] 인원·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명 대상 2천만원 한도, 금리 1.0%
[재원] 초과세수 1.5조원 + 기정예산(소진기금 변경) 0.5조원

긴급대출 6.3조원 프로그램 대상·한도 확대 ^{'21/22년}

[대상자금] 소상공인 긴급대출 ^{'21} 2.0 + 관광융자 ^{'22} 3.6 + 희망대출 ^{'22} 0.7
[조건개선] 인원·시설이용 제한업종 포함 + 대출한도 1→2천만원 확대 등

관광융자 금리 최대 1%p 인하 + 1년간 상환유예 ^{'22년} 체육융자 규모 확대 + 1년간 상환유예

[기존금리] 1~2.25%, [재원] 초과세수 0.5조원
[既발표] 소진융자 상환유예 0.1조원 (초과세수 활용)

부담경감 0.4조원



'21.12~'22.1월간

전기료·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 '21년

[대출조건] 손실보상 80만 + 비대상업종 14만

[재원] 기정예산 0.1조 + 산재기금 0.1조

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'22년

[대상자금] 5만명

[추가연장기한] '22.2→5월말

[세정지원효과] 0.1조원 전망

공연분야 4천명 인력 채용 (40회) 지역특화전시회 등 행사 개최
체육·유원시설, 결혼·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'22년

[재원] 초과세수 활용 85억원, '22년 예산 등 총 0.1조원

매출회복·수요보강 0.4조원



지역상권 회복을 위한

3종 패키지 1.8조원 신속 집행 + 동행세일 조기 개최

'21년

'22년

(6월말→5월초)

[규모] 지역사랑상품권 (1.1조원),
온누리상품권 (0.4조원), 상생소비지원금 (0.3조원)

(정부안 6조원)

'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검토

체험프로그램 개발 등

관광소비 촉진 지원 + 바우처 지급 확대

'22년

(약 500억원)

[재원] '22년 예산 등 0.1조원